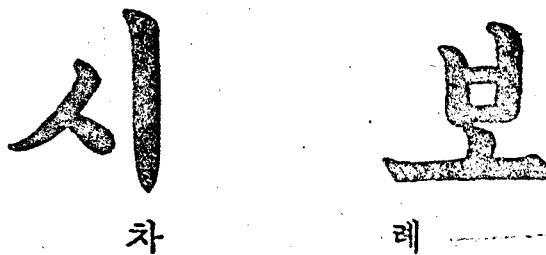


제 350 호

1973. 3.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태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 조례

제 749 호	서울특별시회 <u>파세먼제</u> 에 관한 <u>특별조례</u>	3
제 750 호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u>설치조</u> <u>례중 개정조례</u>	4
제 751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 <u>합숙소</u> <u>설치</u> <u>조례중 개정조례</u>	4
◎ 사령	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세 외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9 호

서울특별시세 외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시민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아파트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서민대중의 주택난 해결과 도시불량지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시비로 건립한 별표 제1호의 아파트 440동을 말한다.

제 3 조 (면세대상과 범위) 시민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시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제 4 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시민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민아파트를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별표제 1호

시민아파트

6-4

제 350 호

시 보

1973.3.5.

구 전년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비고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68			회현	1			웅봉	4			금화	17			효창	2					27
															서강	3					
69	청운	11	회현	7	3.1	12	3.1	12	정릉	8	금화	113	와우	12	이촌	10	본동	14			
	동중	31			낙산	28	웅봉	9	월곡	13	연희	29	노고산	4	산천	10	김포	5			
					전농	5	행웅	11	도봉	5	창천	7									
										현저	5										
										북아현	20										
										웅암	5										
										홍제	6										
										미동	2										
										녹번	7										
70										정동	1										
															서부이촌	6	사당	3		12	
																	당산	2			
계		42		8		45		36		27		211		16		31		24		440	

5-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0 호

서울특별시립직업보도원 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중 "직업보도원" 및 "삼성직업보도원"을 각각 "소년기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1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 설치조례 중개정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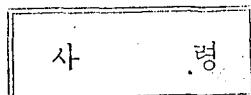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조례중 "합숙소"를 "회관"으로 하고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 1조중 "후생시설을 제공하여" 다음에 "경제적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를 삭제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금을 마련케 함을 목적으로"를 삽입한다.

제 6조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 10조 제 1항중 "지방행정참사"를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73. 2. 26.

상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창진
녹지과 근무를 명함.

법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최대준 시민과 균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균무를 명함.
◎ 1973. 2. 28.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균무를 명함.	이강언 도시가스 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유근성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 균무를 명함.
이재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 균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웅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서대문구 균무를 명함.
김세환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균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정광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북구 균무를 명함.
아동과 지방행정주사 정의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충청북도 지방행정주사 김완일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종로구 균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신갑호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 동대문구 균무를 명함. 자동차정비창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 에 처함. 성북구 균무를 명함.
◎ 1973. 3. 2. 강원도 행정주사 차정우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자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간 감봉에 처함. 성동구 균무를 명함.